백석대학교 대학원 학칙

[시행 2026.07.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백석대학교 학칙」 제3조에 따라 백석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에 설치된 대학원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

제2조(각 대학원의 명칭) 이 학칙에서의 본 대학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① 서울캠퍼스에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인 기독교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인 신학대학원・실천신학대학원・교육대학원・상담대학원・보건복지대학원・문화예술대학원을 둔다.

② 천안캠퍼스에 일반대학원(천안)을 둔다. <개정 2021.11.1., 2026.07.16.>

제3조(교육목표) 각 대학원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일반대학원, 일반대학원(천안): 학문의 기초이론 및 고도의 학술이론과 학문 방법을 연구ㆍ교수하여 연구와 교육 등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해당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각 부문에 헌신할 인재를 양성한다.<개정 2026.07.16.>
2. 기독교전문대학원: 신학적 소양과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체계적인 학문연구와 기독교지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교육을 통해, 우리 민족과 인류사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 구현에 이바지 하는 기독교전문가를 양성한다.
3. 신학대학원: 신구약성경을 토대로 하는 개혁주의생명신학에 입각하여 신학 전반에 걸친 심도있는 연구・교수를 통해 목회자 및 목회협력자로서 인격과 목회능력을 갖춘 영적 지도자를 양성함으로써 신학발전과 목회사역에 기여한다.
4. 실천신학대학원: 개혁주의생명신학에 기초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항상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소양과 역량을 갖춘 목회지도자를 양성한다.
5. 교육대학원: 교육 이론과 실천을 통해 유연한 사고와 태도로 창의성을 추구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교육환경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교육전문가를 양성한다.
6. 상담대학원: 개인과 사회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상담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최적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상담이론 및 실무 역량을 겸비하고 풍부한 임상경력과 자격을 갖춘 상담전문가를 배출한다.
7. 보건복지대학원: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학문 연구와 전문성을 갖춘 인재 교육을 통해 다양한 직무 현장에서 학문적 전문성과 함께, 섬기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기독교 지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
8. 문화예술대학원: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융복합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창의적인 콘텐츠 창작역량,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실기지도, 깊이 있는 학문적 배경을 교육한다.

〔전문개정 2021.11.1., 2025.5.1.〕

제4조(설치과정) ① 일반대학원, 일반대학원(천안), 기독교전문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고 전공에 따라 학석사학위연계과정(이하 “학석사연계과정”), 학석박사학위연계과정(이하 “학석박사연계과정”), 학석사학위통합과정(이하 “학석사통합과정”), 학석박사학위통합과정(이하

“학석박사통합과정”), 석박사학위연계과정(이하 “석박사연계과정”),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이하 “석박사통합과정”)을 둘 수 있으며, 특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개정 2026.07.16.>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는 학과 또는 전공을 두고, 필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 2026.07.16.>

③ <삭제 2025.5.1.>

④ 대학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를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6.07.16.>

⑤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국내·외 일반대학과 공동으로 석사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1.1.><개정 2025.5.1.>

⑥ 각 대학원은 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원외 전담전공(학과)을 설치 및 운영 할 수 있다. <신설 2023.1.2.>

⑦ 박사과정 전공신설의 경우 관련 전임교원의 2분의 1 이상은 최근 5년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의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이 3편 이상이어야 한다(단, 예·체능계열의 경우 2편 이상). <신설 2023.11.6.>

제5조(전공 및 정원 등) ① 대학원에 설치한 학위과정의 학과·전공 및 대학원별 입학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학석사연계과정의 입학정원은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에, 석박사통합과정 입학정원은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에 산정된다. <개정 2023.1.2.>

② 대학원의 위치는 서울과 천안에 두고 백석대학원이라 통칭한다. <개정 2021.11.1.>

제6조(수업방법) ① 일반대학원, 일반대학원(천안), 기독교전문대학원의 수업은 전일제 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야간수업(주말수업 포함), 계절수업, 원격수업, 집중이수제 수업, 유연학기제 수업 등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0.17., 2021.11.1., 2024.2.7., 2026.07.16.>

② 특수대학원의 수업은 주간 및 야간(주말포함)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계절수업, 원격수업, 또는 현장실습 수업, 집중이수제 수업, 유연학기제 수업, 다학기제 수업 등을 병행할 수 있다. 다학기제 수업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17., 2021.11.1., 2024.2.7., 2024.05.27.>

③ <삭 제>

④ 원격수업 교과목 분류, 개설 기준 및 운영과 관리 등 원격수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원격수업 운영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4.2.7.>

제2장 입학

제7조(입학 시기) 대학원 학생의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의 시기는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입학 자격) ①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해당 과정의 입학자격을 갖춘 자로서 각 대학원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국내외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박사학위과정: 국내외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석박사통합과정: 동조 제1호(석사학위과정)를 적용한다. <개정 2022.11.25.>
4. 학석사연계과정, 학석박사연계과정: 본 대학 학사학위과정 재학생 <개정 2022.11.25., 2026.07.16.>
5. 석박사연계과정: 본 대학 석사학위과정 재학생 <개정 2026.07.16.>
6. 학석사통합과정, 학석박사통합과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신설 2026.07.16.>
7. 일반대학원(천안) 가정전문간호학전공의 입학자격은 교육을 받기 전 10년 이내에 의료기관, 보건진료소,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3년 이상 간호사로서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26.07.16.> <조항이동>

② 제1항에 규정한 입학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학위과정에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개정 2021.11.1>
4. 북한이탈주민 <신설 2021.11.1.>
5.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학원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학생 <신설 2021.11.1.>
6. 제4조제4항에 따라 계약에 의하여 운영하는 대학원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학생 <신설 2021.11.1.>

③ 각 대학원은 해당 대학원의 특성에 맞는 입학자격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제9조(입학 전형) 대학원 학위과정의 신입생은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에 의하여 선발한다.

제10조(입학 허가) ① 대학원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의 입학은 총장이 허가한다.

② <삭 제>

제11조(등록 및 입학취소)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등록을 마쳐야 한다.

② 입학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입학 또는 졸업 후에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기일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지원자격을 위반한 경우
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입학한 경우

제12조(재입학) ① 제적된 자가 재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입학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1.>

② 재입학은 소속 학과 및 전공의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동일 과정에 재입학 한 자에게는 제적 전의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과정이 변경된 경우 과목을 추가 이수해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1.2026.09.11., 2026.07.16.> 〔후단신설 2021.11.1.〕

제13조(편입학) ① 편입학은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모집할 수 있다.

② <삭 제>

제3장 등록 및 수업

제14조(재학생 등록) 학생은 매 학기 지정된 기일 내에 정규등록을 해야 한다. 정규등록은 각 학위과정별 수업연한(학기수)에 따른다.<개정 2025.5.1.>

제15조(수업) <삭 제>

제16조(수업일수 및 휴업일) 수업일수 및 휴업일에 관하여는 본 대학 「학칙」 제7조(수업일수) 및 제8조(휴업일)에 준한다.

제4장 수업연한, 재학연한, 수료 및 졸업

제17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대학원, 일반대학원(천안), 기독교전문대학원의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학위과정 및 전공에 따라 2년(4학기), 2년 6개월(5학기) 또는 3년(6학기)으로 하며, 석박사통합과정은 4년(8학기), 학석사통합과정은 6년(12학기), 학석박사통합과정은 8년(16학기)으로 한다. <개정 2023.1.2., 2024.2.7., 2025.5.1., 2026.07.16.>
2. <삭제> <개정 2022.11.25.><삭제 2026.07.16.>
3. 특수대학원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대학원 및 전공에 따라 2년(4학기), 2년 6개월(5학기), 3년(6학기) 또는 1년(4학기)으로 한다. <조항이동 2022.11.25.><개정 2024.05.27., 2025.5.1. 2026.07.16.>

②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재입학의 경우 재학연한은 재입학 후 본 대학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3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원장의 허락을 받아 재학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축할 수 있는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석사학위과정: 1년 이내
2. 박사학위과정: 6개월 이내
3. 학석사연계과정 및 학석사통합과정: 2년 이내 <개정 2022.11.25., 2026.07.16.>
4. 학석박사연계과정 및 학석박사통합과정: 2년 6개월 이내 <개정 2026.07.16.>
5. 석박사연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1년 6개월 이내 <개정 2026.07.16.>

제18조(수료) ① 대학원 학위과정에서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정해진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해당 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② 대학원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졸업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별지 제5호서식(수료증서)을 수여할 수 있다.

제18조의2(졸업) ① 대학원 학위과정에서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정해진 학점을 모두 취득한 후 학위청구논문이 통과한 자에게 학위기(별지 제1~3-1호 서식)를 수여한다. 다만,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학위청구논문을 대체하여 졸업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2024.05.27.>

② 학위논문 제출과 대체, 심사위원의 수와 자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4.05.27.><개정 2026.07.16.>

제5장 교과목·학점·시험 및 성적

제19조(교과과정) 대학원의 교과과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다만, 교육과정 개정 시 재학생에게도 적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교육과정 편성 운영 등으로 필수과목을 수강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과목으로 필수과목을 대체할 수 있다.

제20조(타 대학원 취득학점 인정) 본 대학 각 대학원 및 대학 각 대학원 및 본 대학과 협력관계에 있는 타 대학 대학원 등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6.07.16.>

제20조의2(과정간 취득학점 인정) 본 대학 학사학위과정 재학 중 대학원 교과목을 미리 이수한 자가 해당 대학원에 입학하였을 경우에는 12학점까지 대학원 석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1.]

제20조의3(학습경험 학점 인정) 학교 및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행한 학습·연구·실습·직무경험 등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제21조(이수학점) ① 학위과정의 수료학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일반대학원, 일반대학원(천안)의 석사학위과정은 24학점 이상(다만, 가정정문간호학은 33학점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36학점 이상, 석박사통합과정은 48학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11.25., 2025.5.1., 2026.07.16.>
2. 기독교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은 24학점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36학점 이상, 석박사통합과정은 48학점 이상으로 하며, 수업연한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25., 2026.07.16.>
3. 신학대학원을 제외한 특수대학원 학위과정은 24학점 이상으로 한다. <조항이동 2022.11.25.>
4. 신학대학원(목회학) 학위과정은 92학점 이상으로 하며, 졸업논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86학점 이상으로 한다. <조항이동 2022.11.25.>

② <삭 제>

③ 매 학기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신학대학원(목회학) 학위과정은 20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자격취득 등 대학원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따라 대학원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제21조의2(개설학점) <삭 제>

제22조(시험) 시험은 학사력에 정해진 기간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에 따라서는 시험을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로 대치하거나 임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성적평가) ① C 학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이 한다.

등급	점수	평점	등급	점수	평점
A^+	95~100	4.5	C^+	75~79	2.5
A	90~94	4.0	C	70~74	2.0
B^+	85~89	3.5	F	69 이하	0
B	80~84	3.0	-	-	-

제24조(편입생의 인정 학점) 편입생이 원적대학원에서 취득한 교과목이 대학원 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그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6장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제25조(휴학) ① 휴학은 일반휴학, 군입대휴학, 육아휴학, 질병휴학으로 구분한다.<개정 2023.11.6.>

② 질병 및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⑤ <삭 제>

제26조(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매 학기 개시일 30일 이내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제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1개월이 넘도록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 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자
3. 재학연한 내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4.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5.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

제7장 학위수여 및 명예박사학위 수여

제29조(학위수여 및 종별) ① 학위는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갖춘 자로서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 다만, 통합과정을 중도에 퇴학하는 자가 학칙이 정하는 학위수여기준을 충족한 경우,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퇴학자에게는 석사학위를, 학석박사통합과정 중도퇴학자에게는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11.25., 2026.07.16.>

②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위수여규정」에 따른다.

③ 본 대학원의 학위종별은 별표 2와 같으며, 학위기는 별지 제1호서식(학술학위기 양식) 내지 제3호서식(학위기 양식)에 의한다.

제30조(명예박사학위 수여) ① 일반대학원, 일반대학원(천안) 또는 기독교전문대학원에서는 「고등교육법」 제35조(학위의 수여)제5항에 의거 학문과 문화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거나 교계 및 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적을 이룬 자에 대해서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6.07.16.>

② 명예박사 학위종별은 이를 받을 자의 공헌의 성질에 따라 구분하되 본 대학원에 개설된 관련학과 이외의 분야도 수여할 수 있다.

③ 대학원위원회는 명예박사학위 수여대상자를 심의하여 총장에게 대상자를 추천한다.

④ 총장은 별지 제4호 서식 명예박사학위기를 따라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며 명예박사학위 수여는 본 대학의 정규학위수여일 이외에도 시행할 수 있다.

제8장 공개강좌·연구생 및 특별입학

제31조(공개강좌) ① 공개강좌는 직무, 교양 또는 연구상 전문적인 학식,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공개강좌를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졸업(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본 대학 동문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32조(연구과정) ① 대학원이 개설하는 특정교과목 수강을 희망하는 자를 위해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② 연구과정은 석사과정의 경우 대학교 졸업 이상, 박사과정의 경우 대학원 졸업 이상의 수학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대학원에서 시행하는 시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형에 합격한 경우 입학을 허가한다.

③ 연구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33조(특별입학) <삭 제>

제34조(연구생·재외국민 및 외국인학생 등 입학시기) <삭 제>

제9장 장학금, 학생활동 및 상벌

제35조(장학금)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6.07.16.>

제36조(학생회)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건전한 학풍의 조성과 자치역량의 신장을 목적으로 각 대학원에 학생회를 둘 수 있다.

제37조(학생준수사항 및 상벌) ①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소속 대학원장의 지도와 감독에 따라야 한다.

②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이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③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위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본 대학 학칙을 준용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10장 직제 및 대학원위원회

제38조(직제) ① 대학원의 직제는 법인 정관과 본 대학 직제규정에 의한다.

② 대학원에는 필요한 경우 주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 주임교수는 조교수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위 제2항의 주임교수는 소속 대학원장의 명을 받아 그 전공분야의 수업·연구지도에 관한 사항과 학생의 이수과목 지정 및 수학지도 등을 담당한다.

④ 각 대학원은 자체적으로 연구지도, 상담 등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해 전공별 지도교수를 둘 수 있으며, 신학대학원의 경우 목회후보자 양성을 위해 다수의 전담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11.1.>

⑤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서관(서울)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6.07.16.>

⑥ 「고등교육법」 제11조의2(기숙사비 및 기숙사비심의위원회)에 따라 백석생활관(서울)의 운영 및 생활관비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6.07.16.>

제39조(대학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캠퍼스와 천안캠퍼스에 각각의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이때 서울캠퍼스는 “대학원위원회”, 천안캠퍼스는 “대학원위원회(천안)”라 칭하며, 각각 위원회는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07.16.>

②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캠퍼스의 대학원부총장, 각 대학원장 및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경우 대학원부총장이, “대학원위원회(천안)”의 경우 대학원부총장(천안)이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원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6.07.16.>

③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보직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임보직자가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④ 학술 및 학사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각 대학원에 대학원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소위원회는 제반 사항을 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제4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에서는 해당 캠퍼스 내 대학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1.1., 2026.07.16.>

1.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와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조항이동 2026.07.16.>
5.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조항이동 2026.07.16.>

제4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1.11.1.>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의안을 심의한다. <개정 2021.11.1.>

제11장 협조기관 지정 및 초빙교수 위촉

제42조(협조 및 지원기관) 각 대학원은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교육내용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연구기관을 교육협조기관으로, 관련 사회기관을 운영 협조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3조(초빙교수) 각 대학원은 교육협조기관으로부터 소속 각 대학원이 인정하는 교수자격을 갖춘 사람을 초빙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제12장 보칙

제44조(준용) 본 학칙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본 대학 학칙을 준용한다.

제45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본 학칙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5.1.>

제46조(학칙개정 및 공포절차) ① 학칙을 개정할 경우, 학칙개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교내 전산망 등을 통해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상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학칙 개정안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하며 총장이 이를 공포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이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신학전문대학원 학칙과, 신학대학원, 실천목회대학원, 교육대학원, 특수대학원 학칙은 폐지한다.

② 이 학칙 시행으로 구 학칙 시행 당시의 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구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과 동시에 경영행정대학원, 실천목회대학원은 폐원하되, 이 학칙 시행으로 폐원되는 대학원의 학적을 보유한 학생에게는 이 학칙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삭제 및 신설)** <삭 제> 제15조(수업), 제33조(특별입학), 제34조(연구생, 재외국민 및 외국인 학생 등 입학시기), <신 설> 제46조(학칙개정 및 공포절차)
3. **(경과조치)** 제21조(이수학점) 제1항제3호의 신학대학원 이수학점은 200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본 학칙 시행과 동시에 문헌정보대학원, 정보기술대학원, 기독교예술대학원은 폐원하되, 이 학칙 시행으로 폐원되는 대학원의 학적을 보유한 학생에게는 이 학칙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을 적용하며 행정이관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기독교전문대학원의 목회학 전공(D.Min.)이 실천신학(Th.D. in Min.)으로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목회학 전공으로 입학한 학생들에게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종전의 학칙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4조(설치과정) 이 학칙 시행 당시 기독교전문대학원 재학생 중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에 의해 해당 전공이 통합과정에 포함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정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3. **(경과조치)** 제21조(이수학점)제1항제3호의 경우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재학생의 경우 잔여 이수 학기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경과조치)** 기독교전문대학원의 박사 과정(Ph.D. 중 신학전공자, Th.D.)의 수업연한 등 기타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석박사통합과정에 준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교육대학원의 교육과정 및 평가, 평생교육 전공이 학교컨설팅·경영, 평생교육·진로직업상담 전공으로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교육과정 및 평가, 평생교육전공으로 입학한 학생들에게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종전의 학칙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학칙은 2017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신학대학원 이수학점 변경에 따라 기존 재학생에게도 소급 적용한다.
 ② 이 학칙 시행으로 음악대학원의 기악, 성악, 작곡, 실용음악학, 기독교음악학 전공을 문화예술대학원의 음악학, 실용음악학, 기독교음악학 전공으로 각각 통합한다(입학정원 포함). 다만, 음악대학원 학적을 보유한 학생에게는 이 학칙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을 적용할 수 있다.
3. **(다른 규칙의 개정)**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2호 중 “102학점”을 “92학점”으로 하고, “96학점”을 “86학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의 시행으로 기독교전문대학원의 기독교교육학, 기독교사회복지학, 기독교상담학, 기독교음악학, 기독교행정학, 기독교문학 전공을 교육학, 사회복지학, 상담학, 음악학, 경영ㆍ행정학, 글로벌어문학 전공으로 각각 통합한다. 다만 학생이 입학 당시의 전공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음악대학원 음악교육학 전공의 학적을 보유한 학생에게는 문화예술대학원 음악교육학 전공으로 통합하되 종전의 학칙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의 시행으로 문화예술대학원의 영상예술학 전공을 영상문화콘텐츠학 전공으로 통합한다. 다만, 학생이 입학 당시의 전공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의 시행으로 문화예술대학원의 영상문화콘텐츠학 전공을 기독교문화콘텐츠학 전공으로 통합한다. 다만, 학생이 입학 당시의 전공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학원학칙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1항을 "①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24학점 이상(단, 가정전문간호학전공 33학점 이상)"로 하고, 현행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되 "신학박사과정 24학점 이상"을 추가하며, 현행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4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의 시행으로 기독교전문대학원 옵토메트리학 석사과정은 "검안학석사(옵토메트리학)", 박사과정은 "검안학박사"를 수여한다. 다만, 학생이 입학 당시의 학위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학칙은 202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6년 0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①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5항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3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의 시행으로 보건복지대학원 심리치료 전공은 심리치료학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보건학석사(심리치료학)”를 수여한다. 다만, 학생이 입학 당시의 학위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입학정원 및 전공신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정원조정 및 전공신설, 폐지 등은 202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존 학적을 보유한 학생에게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기독교전문대학원 “응용심리학(외국인)”, 일반대학원(천안) “무인이동체융합”전공은 202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22.11.25., 2023.1.2., 2023.11.6., 2024.2.7., 2024.5.27., 2024.11.8., 2025.5.1., 2025.7.21., 2025.12.1., 2026.07.16.>

대학원별 학위과정 전공분야 및 학생정원

위치	대학원	과정	전공분야	입학정원
천안 캠퍼스	일반대학원 (천안)	석사 (M.S., (M.S. in Nursing, M.A., M.S.D.S.)	소프트웨어융합, 가정전문간호학, 인성개발학, 무인이동체융합	33
		박사(Ph.D.)	소프트웨어융합	5
		석사 (M.P.A., M.S., M.K.L.T.S., M.A., M.K.C.T.C., M.B.A.)	공연예술학(외국인), 디자인융합(외국인), 소프트웨어융합(외국인), 한국어관광스포츠융합(외국인), 한국문화태권도융합(외국인), K-비즈니스(외국인)	정원외
서울 캠퍼스	일반 대학원	석사(M.A., M.Optom.)	범죄심리학, 옵토메트리학	20
		박사(Ph.D., O.D.)	범죄심리학, 상담학, 특수교육학, 옵토메트리학	60
		박사(Ph.D.)	경영학(외국인), 교육학(외국인)	정원외
	기독교전문 대학원	박사(Ph.D., Th.D. in Min.)	신학, 경영·행정학, 교육학, 기독교선교학, 기독교철학, 미술학, 사회복지학, 음악학, 실천신학	90
		석박사통합(Ph.D.)	신학, 기독교교육학, 기독교선교학, 경영·행정학	
		박사(Ph.D.)	응용심리학(외국인)	정원외
	신학 대학원	석사(M.Div.)	목회학	300
	실천신학 대학원	석사 (Th.M. in P.T.)	실천신학	30
	교육대학원	석사(M.A.)	유아교육, 응용행동분석, 상담심리, 평생교육·진로직업상담, 기독교학교교육, 코칭심리, 미술치료교육, 유아특수교육	82
		석사(M.A.)	교육학(외국인)	정원외
	상담대학원	석사(M.A)	가족상담학, 기독교상담학, 기업및조직상담학, 아동상담학, 예술심리치료, 중독상담학, 청소년상담학	130
		석사 (M.B.A., M.A.)	경영학(외국인), 글로벌경영학(외국인), 응용심리학(외국인)	정원외
	보건복지 대학원	석사(M.A., M.H.S., M.S.)	물리치료학, 범죄심리학, 복지경영학, 사회복지학, 심리치료학	40
	문화예술 대학원	석사 (M.M., M.F.A.)	기독교음악학, 실용음악학, 음악학, 기독교문화콘텐츠학, 기독교미술학, 영화·영상학	40
		석사 (M.M., M.F.A.)	음악학(외국인), 미술학(외국인)	정원외
각 대학원		연구과정	석사, 박사 전공분야와 동일	약간명

[별표 2] <개정 2022.11.25., 2023.1.2., 2023.11.6., 2024.2.7., 2024.5.27., 2024.11.8., 2025.5.1., 2025.7.21., 2025.12.1., 2026.07.16.>

학위종별 및 표기방법

캠퍼스	대학원	과정	계열	전공분야	학위구분	국문학위	영문학위
천안 캠퍼스	일반 대학원 (천안)	석사	공학	무인이동체융합	학술학위	스마트드론학석사	M.S.D.S.
				소프트웨어융합		공학석사	M.S.
			인문사회	인성개발학		인성개발학석사	M.A.
			자연과학	가정전문간호학		간호학석사	M.S.in Nursing
			공학	소프트웨어융합(외국인)	학술학위	공학석사	M.S.
			예체능	공연예술학(외국인)		공연예술학석사	M.P.A.
				디자인융합(외국인)		예술학석사	M.A.
				한국문화태권도융합(외국인)		한국문화태권도융합석사	M.K.C.T.C.
			인문사회	한국어관광스포츠융합(외국인)		한국어관광스포츠학석사	M.K.L.T.S.
				K-비즈니스(외국인)		경영학석사	M.B.A.
		박사	공학	소프트웨어융합	학술학위	공학박사	Ph.D.
서울 캠퍼스	일반 대학원	석사	인문사회	범죄심리학	학술학위	범죄심리학석사	M.A.
			자연과학	옵토메트리학		검안학석사	M.Optom.
		박사	인문사회	범죄심리학	학술학위	범죄심리학박사	Ph.D.
				상담학		상담학박사	
				특수교육학		교육학박사	
			자연과학	옵토메트리학		검안학박사	O.D.
			인문사회	경영학(외국인)	학술학위	경영학박사	Ph.D.
				교육학(외국인)		교육학박사	
	기독교 전문 대학원	박사	인문사회	신학	학술학위	신학박사	Ph.D.
				교육학		교육학박사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박사	
				기독교선교학		선교학박사	
				음악학		음악학박사	
				기독교철학		철학박사	
				경영 · 행정학		행정학박사	
				미술학		미술학박사	
			인문사회	실천신학	전문학위	신학박사(실천신학)	Th.D.in Min.
			인문사회	응용심리학(외국인)	학술학위	심리학박사	Ph.D.
		석박사 통합	인문사회	신학	학술학위	신학박사 신학석사	Ph.D. Th.M.
				기독교교육학		교육학박사 교육학석사	Ph.D. M.A.
				기독교선교학		선교학박사 선교학석사	
				경영 · 행정학		행정학박사 행정학석사	

캠퍼스	대학원	과정	계열	전공분야	학위구분	국문학위	영문학위
서울 캠퍼스	신학 대학원	석사	인문사회	목회학	전문학위	목회학석사(목회학)	M.Div.
	실천신학 대학원	석사	인문사회	실천신학	전문학위	실천신학석사(실천신학)	Th.M. in P.T.
	교육 대학원	석사	인문사회	유아교육	전문학위	교육학석사(유아교육)	M.A.
				응용행동분석		교육학석사(응용행동분석)	
				상담심리		교육학석사(상담심리)	
				평생교육·진로직업상담		교육학석사(평생교육·진로직업상담)	
				기독교학교교육		교육학석사(기독교학교교육)	
				코칭심리		교육학석사(코칭심리)	
				미술치료교육		교육학석사(미술치료교육)	
				유아특수교육		교육학석사(유아특수교육)	
				교육학(외국인)	전문학위	교육학석사(교육학)	M.A.
	상담 대학원	석사	인문사회	가족상담학	전문학위	상담학석사(가족상담학)	M.A.
				기독교상담학		상담학석사(기독교상담학)	
				청소년상담학		상담학석사(청소년상담학)	
				아동상담학		상담학석사(아동상담학)	
				예술심리치료		상담학석사(예술심리치료)	
				중독상담학		상담학석사(중독상담학)	
				기업및조직상담학		상담학석사(기업및조직상담학)	
				경영학(외국인)	전문학위	경영학석사(경영학)	M.B.A.
				글로벌경영학(외국인)		경영학석사(글로벌경영학)	M.B.A.
				응용심리학(외국인)		심리학석사(응용심리학)	M.A.
	보건복지 대학원	석사	인문사회	사회복지학	전문학위	사회복지학석사(사회복지학)	M.A.
				복지경영학		사회복지학석사(복지경영학)	
				범죄심리학		범죄심리학석사(범죄심리학)	
			자연과학	물리치료학	전문학위	이학석사(물리치료학)	M.S.
				심리치료학		보건학석사(심리치료학)	M.H.S.
	문화예술 대학원	석사	예체능	기독교음악학	전문학위	음악학석사(기독교음악학)	M.M.
				음악학		음악학석사(음악학)	
				실용음악학		음악학석사(실용음악학)	
				기독교문화콘텐츠학		예술학석사(기독교문화콘텐츠학)	M.F.A.
				기독교미술학		미술학석사(기독교미술학)	
				영화·영상학		예술학석사(영화·영상학)	
				음악학(외국인)	전문학위	음악학석사(음악학)	M.M.
				미술학(외국인)		미술학석사(미술학)	M.F.A.

[별지 제1호서식]

학술학위기

기독교전문대학원 학술(석·박)제 호

학 위 기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본 대학 기독교전문대학원 석(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후 아래 논문이 심사를 통과하였으므로 이에 ○○학 석(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인정함.

논 문 _____

년 월 일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장 (학위)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석(박)사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백석대학교총장 (학위) (인)

[별지 제1-1호서식]

학술학위기

대학원 학술(석·박)제　　호

학　위　기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본 대학 대학원 석(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후 아래 논문이 심사를 통과하였으므로 이에 ○○학 석(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인정함.

논 문 _____

년　　월　　일

백석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석(박)사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백석대학교총장(학위) (인)

[별지 제2호서식]

전문학위기

기독교전문대학원 전문(석·박)제 호

학 위 기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본 대학 기독교전문대학원 석(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후 아래 논문이 심사를 통과하였으므로 이에 ○○학 석(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인정함.

논문: _____

년 월 일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장 (학위)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석(박)사()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백석대학교총장 (학위) (인)

[별지 제3호서식]

학위기

○○대학원 제 호

학 위 기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본 대학 ○○대학원 석사 과정을 이수하고, ○○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인정함.

백석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석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백석대학교총장 (학위) (인)

*논문제출 대신 교과목 추가수강 등 학위논문을 대체하여 졸업하는 경우 <2024.5.27.>

[별지 제3-1호서식]

학위기

○○대학원 제 호

학 위 기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본 대학 ○○대학원 석사 과정을 이수하고, 아래 논문이 심사를 통과하였으므로 이에 ○○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인정함.

논 문:

백석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석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백석대학교총장 (학위) (인)

*논문을 제출한 자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

명예박사 학위기

기독교전문대학원(명박) 제 호

학 위 기

국 적 성
명:
생년월일:

위 분은 ○○○○○○○ 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기에 본 대학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 ○○학 박사학위를 수여하고자 이에 추천함.

년 월 일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장 (학위)
(인)

위의 추천에 의하여 명예 ○○학 박사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백석대학교총장 (학위) (인)

[별지 제5호서식]

수료증

○○대학원 제 호

수 료 증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본 대학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백석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인)

백석대학교총장 (학위) (인)

[별지 제6호서식]

졸업(수료)증

○○대학원 제 호

졸업(수료)증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백석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인)

백석대학교총장 (학위) (인)

[별지 제7호서식]

연구실적증명서

○○대학원 제 호

연 구 실 적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본 대학 ○○대학원 연구생으로서 연구 실적이 양호하였기에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백석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인)